

[사 건 명] 행심 2019 - 10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등』 처분
을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
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
서의 봉사 5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3학년 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쪽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2019. 5. 16. 하교 시간에 학교 옆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에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메롱” 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해학생
의 어깨를 잡고 발로 무릎 부위를 4번 찼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1.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접
수하였고, 2019. 5.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
를 개최하여,

다. 2019. 5. 3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 처분 조

치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5.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보다 덩치가 작아 피해학생으로부터 계속 놀림을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학교 앞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로 마주치자 피해학생이 평소에 놀리던 습관대로 “메롱”이라고 놀리자,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청구인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피해학생의 무릎 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이다.

나. 폭력을 행사한 청구인의 잘못도 있지만 “메롱”이라고 놀려 청구인을 격분하게 만든 피해학생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청구인만 처분을 받았으므로 부당하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며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나 서류도 낼 필요가 없고 이번 폭력 사건만 심의한다고 통보받았는데, 학폭위 위원인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료를 만들어와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 2학년 때부터 청구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명든 사진이나 진단서는 증명되고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번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이 내려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기에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놀이터도 같으나, 청구인에게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이 놀이터에 오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등 청구인에게만 견디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한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고, 청구인의 폭력은 일회적인 우발적인 것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해왔던 것은 아니며, 피해

학생 측의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면 청구인의 가계에 몇 달 동안 자식을 밤늦게까지 맡기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피해학생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실과 다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고 발로 무릎을 4번 찬 사건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만이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신체상의 피해를 받았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청구인 역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사항을 정리하여 온 것이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피해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그에 따른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라. 학폭위 위원들은 청구인이 폭력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제 겨우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 점 등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치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치 정도는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2019. 5. 16. 14시 30분경 하교 시간에 학교 옆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에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메롱” 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청구인이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찬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

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어깨를 잡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찬 행위등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청구인의 행위를 피해학생이 메롱이라는 놀림 등으로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학생의 놀림에 화가 난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중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중 학교에서의 봉사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3시간 처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중,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